

## 중재신청인에 대한 의견조사

임희수

이 글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고찰」 가운데 「중재신청인에 대한 의견조사」 부분을 연구자가 재집필 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I. 서론

우리나라엔 1980년 12월 31일 공포된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의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무료로 그 피해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정정보도청구권」이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동 위원회가 중재를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고, 그 중재건수 만도 278건(1985.12.31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언론중재제도의 기본 취지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도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제도가 얼마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론에 의해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여 중재신청을 한 시민들은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으며, 중재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1981년 5월 7일부터 1985년 7월 15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중재를 신청한 256건의 신청인인 총 6명 중에서 중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13명과 여러 해에 중복되게 신청한 4명을 제외한 1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며, 합의·불성립·취하에 따라 각각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작성되었다. 설문지는 반송봉투를 동봉하고 우편으로 우송하여, 그 중 47통인 42.0%가 반송되어왔다. 그 응답률이 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전화 인터뷰를 24명에게 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의 응답률은 전화 인터뷰까지 합해서 64.3%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 중재를 신청한 전원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했으나 주초불명·이사·응답거부 등으로 인해 설문지 회수율이 높지 않았고, 2차로 실시한 전화 인터뷰는 서울지역에만 국한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응답자 중합의·불성립·취하한 사람들의 비율이 달라, 만족도나 권리회복의 정도 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었다.

### II. 의견조사 분석 결과

**중재합의로 정정보도를 받은 신청인 중 권리회복이 되었다는 응답은 29%에 불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결과, 신청인들이 자신의 명예 혹은 권리가 회복되었다고 느끼는 정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중재결과 합의의 경우 「회복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29%이었고, 「그저 그렇다」가 25%, 「회복되지 않았다」가 46%로 나타났으며, 중재가 불성립된 사람들은 73%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그저 그렇다」가 12%,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5%이었다. 또한 취하의 경우엔 「회복되지 않았다」가 54%, 「그저 그렇다」가 15%, 「회복되었다」가 31%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9%, 「그저 그렇다」가 17%, 「회복되었다」가 24%이다.

**표 1. 권리회복에 대한 인식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저그렇다	회복되었다
합 의	46%	25%	29%
불 성 립	73%	12%	15%
취 하	54%	15%	31%
전 체	59%	17%	24%

**표 2. 권리회복을 위한 다른 방법**      단위 : 명

내 용	인원수(구성비)
법 정 투 쟁	14(36%)
방법이 절대 없다	7(18%)
작가나 기자에 의한 공개 사과	5(13%)
작가(기자) 문책	5(13%)
각 신문에 게재	4(10%)
기 타	4(10%)
계	39(100%)

「만일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귀하의 명예회복을 위한 다른 방법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체 응답자 중 39명(54%)이해주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소송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등 법정투쟁이 더 효과적 근 방법이라는 의견이 36%였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지 일단 훼손된 명예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의견도 많았다. 그리고 작가나 기자에 의한 신문지상을 통한 공개사과, 작가나 기자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는 의견, 또한 피해를 입힌 신문뿐만 아니라 전 신문에 게재하여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다.

### 오보가 가족 및 친지에게도 피해를 주었다고 56%가 주장

「언론에 의한 귀하의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로 인해 귀하의 가족 및 친지들도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6%(40명)가 「피해가 있었다」고 대답했고, 40%(29명)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중재 결과별로 살펴보면 합의와 불성립의 경우엔 주변의 피해가 있었다는 대답이 훨씬 많은데 비하여 취하의 경우에는 반대현상을 나타내었다. 이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주변의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쉽게 매체와

타협하여 취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피해내용은 정신적 피해가 가장 많았고,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도 않았다.

**표 3. 주변의 피해상황**

	있 다	없 다	무응답	계
합 의	15 (63%)	8 (33%)	1 (4%)	24 (100%)
불성립	20 (67%)	9 (30%)	1 (3%)	30 (100%)
취 하	5 (28%)	12 (67%)	1 (5%)	18 (100%)
계	40 (56%)	29 (40%)	3 (4%)	72 (100%)

오보를 막기 위해서는 기자의 자질향상이 시급하다고 57%가 제안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자들의 자질향상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화하거나 공정한 보도를 하지 못하여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가 생기므로 기자의 자질향상이 우선적으로 급하다」는 의견이 57% (41명)로 가장 많았고, 「언론이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의견(11%, 8명), 「언론인 스스로 자중·반성해야 한다」는 의견(10%, 7명), 「규제법의 강화」(7%, 5명), 「국민각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5%, 4명)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기자의 자질향상이나 언론의 민주화, 언론인 스스로의 반성 등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루어 언론의 인권침해의 해결은 결국 언론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표 4. 언론의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선결문제**

단위 : 명

내 용	인원수 (구성비)
기자의 자질 향상	41 (57%)
언론의 민주화	8 (11%)
언론인 스스로 반성	7 (10%)
규제법 강화	5 ( 7%)
국민 경각심 고취	4 ( 5%)
기 타	2 ( 3%)
무 응 답	5 ( 7%)
계	72 (100%)

「위에서 열거한 인권침해의 원인이 제거된다면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언론의 인권침해 방지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막을 수 없다」가 23%, 「그저 그렇다」가 12%, 「막을 수 있다」가 65%로 대체로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중재 결과별로 살펴보면 합의 응답자 중 언론의 인권침해방지 가능성에 관한 의견은 「막을 수 없다」가 21%, 「그저 그렇다」가 17%, 「막을 수 있다」가 62%였고, 불성립의 경우엔 「막을 수 없다」가 37%, 「그저 그렇다」가 7%, 「막을 수 있다」가 56%이었다. 취하의 경우에는 「그저 그렇다」가 18%, 「막을 수 있다」가 82%로 「막을 수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자의 자질이 향상되거나 언론의 선정주의적 풍토, 과열경쟁의 제거, 규제제도의 강화, 법의식의 고취 제반문제가 해결된다면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언론의 인권침해 방지 가능성에 대한 의견**

	막을 수 없다	그저 그렇다	막을 수 있다
합 의	21%	17%	62%
불성립	37%	7%	56%
취 하	-	18%	82%
전 체	23%	12%	65%

언론에 의해 침해를 당한 후, 언론을 보는 신청인의 시각은 부정적

응답자들이 대답한 「인권침해 전과 후의 언론에 대한 태도는 변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64%(46명)이었고, 인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32%(23명)이며 4%(3명)가 대답하지 않았다. 중재 결과별로 살펴보면 합의인 경우는 54%가 변했고, 불성립의 경우엔 67%가, 취하는 72%가 변했다고 대답했다. 「태도가 변했다」고 대답한 46명 중 39명이 응답한 내용을 보면 신뢰감저하(14명, 36%)가 가장 많았고, 기자의 자질이 너무 낮아 일방적·편파적인 왜곡보도를 하거나 기사에 천박·저열한 표현이 많고, 공익을 위한 보도가 아니라 기사만을 위한 보도가 많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기 전과 비교해 볼 때 보도태도가 더 신중해진 것 같다는 의견(3명, 8%)도 있었다.

**표 6. 언론에 대한 태도**

	변 했 다	변하지 않았다	무 응 답	단위 : 명
합 의	13 (54%)	11 (46%)		24 (100%)
불성립	20 (67%)	7 (23%)	3 (10%)	30 (100%)
취 하	13 (72%)	5 (28%)		18 (100%)
계	46 (64%)	23 (32%)	3 (4%)	72 (100%)

**표 7. 변한 태도 내용**

내 용	단위 : 명
인원수 (구성비)	
기사에 대한 신뢰감 저하	14 (36%)
기자의 낮은 수준	10 (25%)
기사내용의 낮은 수준	7 (18%)
더 신중해 집	3 ( 8%)
기 타	5 (13%)
계	39 (100%)

언론에 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안다고 대답했고, 그 이외의 정정보도청구권, 프라이시권리, 초상권, 신용권 등에 대해서는 반 이상이 몰랐었다고 대답했다.

표 8. 일반적 사항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알고있었다	몰랐다
1. 언론중재위원회	38 (53%)	34 (47%)
2. 신문윤리위원회	49 (68%)	23 (32%)
3. 방송심의위원회	36 (50%)	36 (50%)
4. 정정보도청구권	24 (34%)	48 (66%)
5.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44 (61%)	28 (39%)
6. 프라이버시권리	32 (45%)	40 (55%)
7. 초 상 권	12 (16%)	60 (84%)
8. 신 용 권	12 (16%)	60 (84%)
9.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8 (66%)	24 (34%)

###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홍보가 필요해

언론중재위원회를 알게 된 경위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언론에 의해 침해를 당한 후 의논하여 알게 되었다는 대답(24명, 33%)이 가장 많았다. 신문·방송의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사람도 22%(16명)나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침해 전에는 몰랐다가 침해된 후에 방법을 모색하다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홍보에 대한 문제점이 자주 거론되는데, 이 결과를 보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표 9. 언론중재위원회를 알게 된 경위      단위 : 명

알게 된 경위	인원수(구성비)
친 지	24 (33%)
신 문·방 송	16 (22%)
신문윤리위원회	10 (14%)
상 식	10 (14%)
변 호 사	4 ( 6%)
법 전	2 ( 3%)
무 용 답	2 ( 3%)
계	72 (100%)

### 중재합의의 경우, 합의사항에 대해 만족한 신청인은 16%로 매우 낮아

합의인 경우 합의사항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대량이 16%(4명)이었고, 「그저 그렇다」가 42%(10명), 「불만이다」가 42%(10명)으로 나타났다. 중재가 불성립되었는데도 법원에 제소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매체가 해명기사나 사과문을

내주었기 때문」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소송절차가 번거로워서」, 「소송을 제기해도 별 이익이 없을 것 같아서」 등이 그 이유로 지적되었다. 중재를 취하한 이유로는 자진취하, 압력취하, 협의취하 등이 있었는데, 자진취하의 경우에는 기자나 작가의 사과에 의해 혹은 다시는 보도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자진취하를 했고, 압력취하의 경우에는 매체에서 강한 압력을 가해왔기 때문에 취하를 하였다. 협의 취하인 경우는 정정보도를 약속하거나 속보형식이나 PR 기사 등을 약속한 경우인데 그 협의사항을 지킨 경우가 75%정도 된다는 대답이 나왔다.

### III. 결어

중재를 신청한 신청인들의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의견과 중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견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본 조사에 나타난 바로는 신청인들이 중재결과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물론 완벽한 제도란 불가능하고, 일단 언론에 의해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중재 결과인 합의의 경우도 권리회복에 대한 만족도가 29%라는 것은 본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언론사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언론사측에서는 이 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긴 안목으로 보면 이러한 중재를 통해 잘못 보도된 기사를 정정해준다는 것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높여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는 우리나라 언론의 발전을 위해 오히려 필요하며, 언론보도에 의해 개인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언론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된 지 5년, 그간 효율적인 중재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시민의 권익보호라는 언론중재제도의 궁극적 이념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본 연구가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 송학과, 동 대학원졸업